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2104
----------	------

제출년월일 : 2011. 10. 24.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행 조례상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자수입은 연도 말에 지급됨.
- 당초 예상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종 감사 및 시의회에서 지적 됨
- 위와 같은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로 변경 (안 제5조 3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9. 6. ~ 9. 26.(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계획/2011.9.1.)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를 “이자수익금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안 상 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술계장 박 종 미
	담당자 성명·전화	최 부 현 (행정 279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운용관리)</p> <p>① ~ ② (생략)</p> <p>③ 기금은 <u>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u>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운용관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자수익금 범위에서.....</p>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0.03.10 조례 제0905호

개정 2002.10.08 조례 제1033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11.30 조례 제1255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09.05.06 조례 제1471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5.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 <삭제 2009.5.6>

제12조 <삭제 2009.5.6>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2.10.0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예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